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함)에 대해 구체적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64호, 2024. 1. 9. 일부개정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 사용료의 관리·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, 면제,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및 업무를 공단에게 위탁하는 근거 마련(안 제31조제4항제6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항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

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의6부터 제1호의8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, 결정 및 감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~③ (생 략)	제3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~③ (현행과 같음)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한국환경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1의2.</u> ~ <u>1의5.</u> (생 략)	2. ~ 5. (현행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6. <u>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, 결정 및 감면</u>
<u>1의6.</u> ~ 3. (생 략)	7. ~ 13. (현행 제1호의6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84